

의안번호	제 236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5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6
----------	-----

제출연월일 : 2008년 5 월 7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행정심판·행정처분과 도정 주요 정책 결정 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 (안 제3조)
 -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결정, 도정 주요 시책·사업 결정
 - 행정심판, 행정처분
- 도정배심원단 운영 및 의견 반영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만19세 이상인 자로 500여명 규모의 도정예비배심원 위촉
 - 사안에 따라 도정배심원단 구성(5~30명) 의견 반영
- 심의결과 보안 (안 제9조)
 - 도정배심원단의 심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 도정배심원단 심의결과 공개 원칙

3. 조 례 안 : 불 임

4. 관련법령 발취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도정배심원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정예비배심원단”이란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 주요정책 결정 및 처분 등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도민들을 말한다.
2. “도정배심원단”이란 도정예비배심원단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도민들을 말한다.
3. “도정배심원단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란 도정배심원제 시행 대상 업무인 행정심판, 행정처분, 주요정책결정 사무를 처리하는 충청북도 소관 실·과·팀을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 ① 도정배심원단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사항 결정의 경우
2. 도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3. 행정심판 사건 중 청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사전 예고 시 처분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청구자 또는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도정배심원제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행정심판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4.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
5. 그 밖에 도정배심원제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4조(도정예비배심원단 선정 등) ① 도정예비배심원단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시군별 인구비례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500여명 규모로 위촉하되, 시군별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정예비배심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는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 ① 운영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자 또는 행정처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정배심원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정배심원단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6조(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 ① 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도정배심원단의 대표는 도정배심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는 도정배심원단 회의를 주재한다.
③ 도정배심원단 의견은 출석 배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7조(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서를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도정배심원단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정배심원의 제척) 도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제9조(심의결과 보안 등) ① 도정배심원은 심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7조의 도정배심원단 심의·운영 결과를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5조에 의거 심의에 참여한 도정배심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취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법】

第777條 (親族의 범위) 親族關係로 인한 法律上 效力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에 미친다.

1. 8寸이내의 血族
2. 4寸이내의 姻戚
3. 配偶者